2019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□ **개최일시** : 2019. 10. 23.(수) 15:00

□ **장　　소** : MI 310

□ **평의원회 참석현황**

참석의원	9명	박현준(의장), 박재호, 김혜경, 서영호, 정동원, 이주연, 임경섭, 박병준, 박영원
불참의원	4명	명성민(부의장), 안석환, 신동원, 이종진

□ **간　　사** : 기획팀 주임 이순진

□ **참 석 자** : 학사팀장 오석창, 기획팀 주임 박현주(회의안건 설명)

□ **개회선언 · 성원보고**

– 평의원 총 13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19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함.

□ **회의안건**

1. 학칙 개정(안) 심의
2. 2019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문

□ **회의안건 설명**

– 학칙 개정(안)과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하여 각각 오석창 학사팀장과 박현주 기획팀 주임이 설명함

□ 회의내용

[안건 1] 학칙 개정(안) 심의 : 검토 후 특이사항 없음으로 원안 통과

학칙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심의결과
제10조(학기) ① ~ ② (생략)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실습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④ (생략)	**제10조(학기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현장실습학기, 창업실습학기, 프론티어학기 및 신입생동기유발학기 등을 -------- ---, 현장실습학기, 창업실습학기, 프론티어학기 및 신입생동기유발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	원안승인
제21조(재입학) ① (생략) ② 총장은 총 정원에 남은 인원이 있는 경우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④ 학사경고 또는 유급으로 제적된 자는 그 횟수를 재입학 이후 발생분과 통산하지 않으며, 제적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.	**제21조(재입학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허가할 수 있으며, 제적된 학기로부터 한 학기를 경과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④ 학사경고 또는 유급으로 제적된 자는 그 횟수를 재입학 이후 발생분과 통산하지 않는다.	원안승인
제7장 등록 **제23조(등록금)** ① (생략) ② 등록금은 학기 단위로, 계절수업 수강생의 등록금은 학점 단위로 따로 정한다. ③ ~ ④ (생략)	**제7장 등록** **제23조(등록금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, 시간제 등록생, 계절수업 및 수업연한(8학기) 초과 수강생의 등록금은 학점 단위로 따로 정한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	원안승인
제8장 휴학, 복학, 퇴학, 제적 **제27조(휴학)** ① (생략)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 등 법령에 근거한 휴학과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경우 최대 4학기까지만 허용한다. ④ (생략)	**제8장 휴학, 복학, 퇴학, 제적** **제27조(휴학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각각 최대 4학기까지만 허용한다. ④ (생략)	원안승인

의 장	부의장	간 사
		이은진

현행	개정안	심의결과
제9장 교과목과 그 이수 **제31조(교육과정)** ① (생략) ②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③ (생략)	**제9장 교과목과 그 이수** **제31조(교육과정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편성과 운영에 ----- -----. ③ (생략)	원안승인
제36조(수업의 방법 등)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집중수업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, 현장실습수업 및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학과의 수업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. ③ (생략)	**제36조(수업의 방법 등)** ① ----- -----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, 현장수업,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	원안승인
제49조의2(졸업연기) 학생은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2년까지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.	**제49조의2(학사학위 취득유예)** ----- ----- 학사학위를 취득유예 -----.	원안승인
제52조(성적평가) ① ~ ④ (생략) <신 설>	**제52조(성적평가)**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출석일수가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의 해당 교과목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의 학기 중 조기 취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「학사운영 규정」으로 정한다.	원안승인
제53조(시험) ① 시험은 정기시험·수시시험·추가시험 등으로 구분하되, 시험실시 시기 및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. ② 출석하여야 할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 교과목 성적은 F등급으로 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가 학기 중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③ 병역, 질병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④ ~ ⑤ (생략)	**제53조(시험)** ① 시험은 정기시험·수시시험·추가시험 등으로 구분하되, 시험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. ② 삭제 ③ ----- -----. 다만,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타 평가방법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	원안승인

의 장	부의장	간 사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th>심의결과</th></tr>
<tr><td>제61조(지도교수)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어 CMP (Career Mentoring Professor)제도를 운영한다.</td><td>제61조(지도교수)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생애지도전담지도교수(CMP: Career Mentoring Professor)제도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사제도 이행 증진을 위해 대학생활지도교수(LMP: Life Mentoring Professor) 제도를 운영한다.</td><td>원안승인</td></tr>
<tr><td>제80조(기능)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
2. 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3.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5. 장학금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중요한 사항</td><td>제80조(기능) ------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1. ----------
2. ----------
---
3. 그 밖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<삭제>
5. <삭제>
6. <삭제></td><td>원안승인</td></tr>
<tr><td>제82조(교무위원회의 설치) ① 우리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.
②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, 학과, 부속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3. 학생정원, 입학, 수업, 시험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4. 학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총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td><td>제82조(교무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「교무위원회 규정」으로 정한다.</td><td>원안승인</td></tr>
<tr><td><별표 1> 모집단위별 입학정원
<후단 신설></td><td><별표 1> ----------
<table><tr><th rowspan="2">단과대학</th><th>2020학년도</th></tr><tr><th>학과</th><th>입학정원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사회문화대학</td><td>종교문화학과</td><td>10</td></tr><tr><td>한국어교육문화학과</td><td>10</td></tr><tr><td>사회복지학과</td><td>40</td></tr><tr><td>경찰행정학과</td><td>45</td></tr><tr><td>연극영화학과</td><td>38</td></tr></table></td><td>원안승인</td></tr>
</table>

의 장	부의장	간 사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th>심의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 rowspan="12">융합과학기술대학</td><td colspan="2">의생명과학과</td><td>3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제약공학과</td><td>3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식품공학과</td><td>28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생체의공학과</td><td>4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컴퓨터공학과</td><td>4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창의융합공학부</td><td>전기전자공학전공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소방방재공학전공</td><td>3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융합디자인학과</td><td>3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말산업융합학과</td><td>25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체육학부</td><td>스포츠지도전공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스포츠산업전공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무예경호전공</td><td>30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의료보건대학</td><td colspan="2">간호학과</td><td>98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작업치료학과</td><td>4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임상병리학과</td><td>5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보건행정학과</td><td>33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의료뷰티케어학과</td><td>30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항공대학</td><td colspan="2">항공운항학과</td><td>3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항공정비학과</td><td>4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항공서비스학과</td><td>46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항공기계공학과</td><td>45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항공재료공학과</td><td>40</td></tr>
<tr><td>계</td><td colspan="2">4개단과대학, 22개학과, 2개학부 5개전공</td><td>968</td></tr>
</table>
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 칙(개정 2019. 5. 28.)
제1조(시행일) (생략)
제2조(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(생략)
제3조(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 조치) ① 이 학칙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모집중단 된 사회문화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, 경영학과, 국제통상학과, 법무법학과는 2021학년도(2022년 2월말)까지 존속한다.
② ~ ④ (생략)</td><td>부 칙(개정 2019. 5. 28.)
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제2조(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(현행과 같음)
제3조(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 조치) ① 이 학칙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모집중단 된 사회문화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, 경영학과, 국제통상학과, 법무법학과의 존속기간은 「구조조정 규정」에 따른다.
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td><td>원안승인</td></tr>
</table>

의 장	부의장	간 사
한글		이은진

[안건 2] 2019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문 : 검토 후 특이사항 없음으로 원안 통과

1) 주요편성 내용

▶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 분석 및 자금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

▶ 예산 편성 시, 고정지출 및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기타지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편성

▶ 본예산에 비해 약 17억 감액

가. 수입

(금액단위 : 천원)

항목(관)	추경예산 편성 주요 내용	추경 예산액	본예산
등록금 수입	- 본예산 대비 등록예상인원(3519명 -> 3593명)증가로 인한 학부 수업료 증가 (10억) - 본예산 대비 등록예상인원 증가로 인한 입학금 수입 증가(9천7백) - 본예산 대비 등록예상인원 감소로 단기수강료 수입 감소(1억9천)	27,930,505	27,098,454
전입 및 기부수입	- 지출예산 감소로 인한 경상비전입금 수입 감소(3억8천) - 기부금 증가로 인한 기부금 수입 증가 (1억)	16,805,020	17,346,820
교육부대 수입	- 생활관 관리비 및 시설 대여·사용료 예산 과대책정으로 인한 감소(16억)	7,900,481	9,598,462
교육외 수입	- 잡수입 증가(3천6백)	220,205	183,605

나. 지출

(금액단위 : 천원)

항목(관)	추경예산 편성 주요 내용	추경 예산액	본예산
보수	- 교직원보수규정 변경(학생지도비, 가계보조수당 무기한보류)으로 인한 지출 감소(7억8천)	20,370,880	21,150,898
관리 운영비	- 시설관리비(건축물 관리비) 일부 감소 (3억)	7,982,538	8,372,968
연구학생 경비	-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 감소(2억7천)	19,320,379	19,593,676
투자와 기타자산	- 임의적립기금 재적립으로 임의적립기금 예산 증가(3억5천)	452,188	92,170
고정자산 매입지출	- 기계기구매입비 감소(7억) - 말산업 관련 건설가계정 증가(4억)	3,527,983	3,898,530

의 장	부의장	간 사
		이순진

2) 1차추가경정 총괄표

기관명 : 중원대학교 ※ 수입 = 지출 (단위:천원)

수입						지출					
관 별		추경예산액		본예산액		관 별		추경예산액		본예산액	
	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		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
운영수입	등록금수입(5100)	27,930,505	53.2%	27,098,454	50.0%	운영지출	보수(4100)	20,370,880	38.8%	21,150,898	39.0%
	전입 및 기부수입(5200)	16,805,020	32.0%	17,346,820	32.0%		관리운영비(4200)	7,982,538	15.2%	8,372,968	15.4%
	교육부대수입(5300)	7,900,481	15.1%	9,598,462	17.7%		연구학생경비(4300)	19,320,379	36.8%	19,593,676	36.1%
	교육외수입(5400)	220,205	0.4%	183,605	0.3%		교육외비용(4400)	252,364	0.5%	273,704	0.5%
		0					전출금(4500)	0		0	
		0					예비비(4600)	250,000	0.5%	401,102	0.7%
	계	52,856,211	100.7%	54,227,341	100.0%		계	48,176,161	91.8%	49,792,348	91.8%
자본및부채수입	투자와 기타 자산(1200)	367,059	0.7%	3	0.0%	자본및부채지출	투자와 기타 자산(1200)	452,188	0.9%	92,170	0.2%
	고정자산매각수입(1300)	0		0			고정자산매입지출(1300)	3,527,983	6.7%	3,898,530	7.2%
	유동부채입금(2100)	0		0			유동부채상환(2100)	0		0	
	고정부채입금(2200)	0		0			고정부채상환(2200)	306,296	0.6%	444,296	0.8%
	계	367,059	0.7%	3			계	4,286,467	8.2%	4,434,996	8.2%
이사용전기이월자금	기초유동자산(1100)	0		0		이사용차기이월자금	기말유동자산(1100)	0		0	
	기초유동부채(2100)	0		0			기말유동부채(2100)	0		0	
	전기이월자금 = (기초유동자산-기초유동부채)	-750,642	-1.4%	0			차기이월자금 = (기말유동자산-기말유동부채)	10,000	0.0%	0	
자금수입총계		52,472,628	100.0%	54,227,344	100.0%	자금지출총계		52,472,628	100.0%	54,227,344	100.0%

의 장	부의장	간 사

□ 폐　　회 : 2019. 10. 23.(월) 15:30 에 폐회하다.

교원 : 박현준 (인)

교원 : 박재호 (인)

교원 : 김혜경 (인)

교원 : 명성민 (인)

교원 : 안석환 (인)

직원 : 서영호 (인)

직원 : 정동원 (인)

직원 : 이주연 (인)

직원 : 임경섭 (인)

외부인사 : 신동원 (인)

외부인사 : 이종진 (인)

학생 : 박병준 (인)

학생 : 박영원 (인)